

죽헌 미르데이센터(관악2호) 서비스제공 지침서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체결에 따라서 수급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며 서비스 동의를 체결하고자 합니다.

1. 기관현황

장기요양기관명	죽헌 미르데이센터(관악2호)	전화번호	02-889-8330
소재지	서울시 관악구 은천로25. 정암빌딩 3층	팩스번호	02-889-8331
급여종류	주야간보호 (재가노인복지시설)	이용정원	21명
홈페이지	https://gamirfr.modoo.at/	설립일	2017.03.27
직원현황	8명 (시설장1, 사회복지사1, 간호조무사1, 요양보호사3, 운전원1, 사회복지무요원1)		

2. 장기요양급여 신청과 계약체결

- 1)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2)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본인여부, 요양등급, 요양인정유효기간, 급여의 종류 및 횟수·급여제공내용,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3)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획 및 비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,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3. 급여제공계획 및 내용

급여제공횟수	주6회 (월요일 ~ 토요일)
급여제공시간	오전 08:00 ~ 오후 21:00 (차량 이동서비스 시간 포함) (토요일은 주간만(08:00~16:00)운영하며,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은 휴무)
급여내용	-신체활동지원 : 청결도움(세면, 면도, 구강관리, 목욕 등), 식사도움 옷갈아입기도움, 배설도움(기저귀교환, 배뇨도움)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(체위변경, 복약도움) -기능회복훈련 : 신체기능훈련, 기본동작훈련, 일상생활동작훈련, 물리치료 작업치료, 여가활동, 의사소통도움, 정서지원 -간호 및 처치 : 건강상태확인, 경구약투약, 외용제활용, 상처관리 등 -치매관리지원 : 치매수급자의 정신행동증상 대처 -응급서비스 : 응급상황대처 -이동지원 : 외출 시 동행, 이동서비스

♥ 2023년 프로그램 일정표 ♥

시 간 \ 요 일		월	화	수	목	금	토
오전	08:00~10:00	송영 및 어르신 맞이하기, 인사나누기					
	10:00~10:30	오전간식 및 위생관리, 기초건강체크 (혈압, 맥박, 체온 등)					
	10:30~11:00	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교육 (각종 건강 및 위생관리 교육 진행)					
	11:00~12:00	건강체조 및 스트레칭(줄운동, 공운동 등)					
	12:00~12:10	손씻기 및 앞치마 착용					
점심	12:10~13:00	점심식사 및 양치, 위생관리					
오후	13:00~13:30	기초 건강체크 (혈압, 혈당, 맥박 등), 물리치료 및 휴식(tv감상, 담소나누기 등)					
	13:30~14:00	인지활동					
	14:00~15:00	민요교실 (노래)	인지수 (인지활동)	숲생태교실	인지체조 (신체)	아트별 (미술)	인지활동
	15:00~15:30	오후 간식 및 위생관리					
	15:30~16:00	인지활동(만들기, 색칠하기, 종이접기, 작업치료 등)				시장 구경, 세상 뉴스 전하기	인지활동
	16:00~16:30	신체활동(웃놀이, 오재미던지기,링던지기, 볼링, 인지체조 등)					
	16:30~17:30	주간 송영서비스 실시					오후송영
야간	17:30~18:30	저녁식사 및 양치, 위생관리					
	18:30~21:00	인지활동(만들기, 도안색칠, 한글공부, 종이접기, 작업치료 등)					
		자유시간(담소, tv시청)					
		송영 서비스 실시, 시설안전점검, 마무리					
기타프로그램		○ 주 2회 생활체조 프로그램 ○ 주 1회 요리교실 프로그램 ○ 주 2회 걷기활동프로그램(분기1회 공원 및 수목원 등 산책) ○ 주 1회 손톱관리 ○ 분기1회 이미용서비스 (자원봉사)					

* 상기프로그램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4.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

1) 비용 산정원칙

-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,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, 수가 가산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-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횟수에 따라 해당수가를 산정하되,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.

2) 재가급여 월 한도액

장기요양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월 한도액	1,885,000원	1,690,000원	1,417,200원	1,306,200원	1,121,100원	624,600원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재가급여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.

3) 주야간보호(1일당 이용수가)

구 분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주야간 보호	3시간 미만	'3시간이상 6시간미만 수가의 80% 적용'					
	3시간이상~6시간미만	38,630	35,760	33,010	31,510	30,000	30,000
	6시간이상~8시간미만	51,780	47,960	44,270	42,770	41,240	41,240
	8시간이상~10시간미만	64,400	59,660	55,080	53,580	52,050	52,050
	10시간이상~13시간이하	70,950	65,720	60,720	59,190	57,690	52,050
	13시간 초과	76,080	70,480	65,110	63,600	62,100	52,050

-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- 급여제공 시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.
- 주야간보호 수가는 일상생활지원,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, 개인위생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다.
-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수가의 80% 금액을 적용한다.
-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를 표준으로 하되,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4) 본인일부부담금

본인일부부담금이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수급자 본인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을 뜻한다.

수급자 구분	일반	경감대상자		기초생활 수급권자
본인부담금(%)	15%	6%	9%	면제

-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, 재가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한다.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며,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한다.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소득률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 또는 9%를 본인이 부담한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,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관할 구청에서 승인받은 입소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월 15일 이상 급여 체결한 이용자가 급여계약 체결 후 이용자측 사정에 의하여 미 이용한 경우 해당일의 급여수가의 50% 중, 본인부담금 15%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을 납부해야한다. 이 경우 1

일당 최대 8시간 이상~10시간 미만 급여비용을 적용하며, 월 최대 5일까지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월~금요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5)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
비급여 대상이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그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 (단,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은 면제임)

항목	제공횟수/일	단가/일	비고
중식 및 석식	중식 1회/ 석식1회	4,000원/4,000원	기저귀, 전동칫솔, 개인화장품 등은 필요시 수급자가 구입해야 함.
간식	간식 2회(오전,오후)	1,500원	

5. 급여제공 비용청구 내역서

1) 급여비용

구분	등급	총급여일수	①급여 비용 총액	②공단부담금	③본인부담금(15%)
일반	4	A	$A \times (1\text{일당 시간별 이용수}) = \text{원}$	①-③ = 원	① $\times 15\% = \text{원}$

2) 비급여 비용

항목	단가/일	총급여일수	금액	계
중식	1회 4,000원/일	A	횟수 $\times A = \text{원}$	중식+간식+석식
석식	1회 4,000원/일	A	횟수 $\times A = \text{원}$	
간식	2회 1,500원/일	A	$1,000 \times A = \text{원}$	

3) 수급자 비용부담 청구 내역

항목	내용	금액
- 급여비용	③ 본인부담금(15%)	원
- 비 급여비용	중·석식, 간식비	원
합계		원

4) 비용수납방법

은행	예금주	계좌번호	비고
하나은행	죽헌미르데이센터 (관악2호)	본인부담 409-910032-61004	익월 초에 이용료청구서 통보 받은 후 계좌로 입금
		식재료 409-910032-62604	

6. 보호자(신원인수인)의 권리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-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7. 보호자(신원인수인)의 의무

- 1)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)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3)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- 5)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8. 서비스 종결 사항 (계약해지)

- 1) 현저한 일상생활 동작의 저하로 주야간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.
 - 2) 서비스 일정(송영시간 미 준수) 및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계획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.
 - 3) 배회, 서비스 거부 등 직원의 제재, 감독, 보호를 거부하고 시설물 파손 및 위협적인 행위, 폭언, 폭력을 빈번히 행사하는 경우.
 - 4) 장기간의 병원입원이 필요하여 결석하는 경우 및 전문적인 병원치료, 간호,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.
 - 5) 보호자로부터 노인학대, 방임 등을 받아서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.
 - 6) 전염병이나 개인위생이 청결하지 못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.
 - 7) 센터 이용료를 1개월분 이상 체납하여, 2회 이상의 거듭된 비용수납요구에 불응하고, 비용 수납의 의지가 없는 경우.
 - 8)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.
 - 9)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이 폐쇄 조치되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.
 - 10) 일주일간의 시설적응 기간 동안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여,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.
- * 기타 서비스 종결사유 발생 시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협의하여 결정한다.